

경운대학교 입학사정관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‘우리대학교’)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입학사정관의 임용과 업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입학사정관은 전임 입학사정관,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한다.

- ① ‘전임 입학사정관’은 교수사정관, 채용사정관, 전환사정관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.
1. 교수사정관: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고, 전형연구와 운영을 하기 위해 우리대학교 교원 중에서 임명한 입학사정관
 2. 채용사정관: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학생부 종합전형 개발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
 3. 전환사정관: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직원 중에서 인사 발령된 입학사정관
- ② ‘위촉 입학사정관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대학교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한시적으로 위촉한 내부 및 외부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1. 내부 위촉사정관 :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임명한 사정관
 2. 외부 위촉사정관 : 지역사회 인사, 퇴직한 교직원 등 외부의 인사 중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임명한 사정관

제3조(기능) 입학사정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한다.

- ① 학생부 종합전형 시행 계획 수립 및 전형 시행(서류평가 및 면접 등)
- ② 고교정보 수집과 분석 및 고교-대학 연계 활동
- ③ 입학전형방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
- ④ 우리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업무
- ⑤ 우수학생의 발굴과 선발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홍보 업무
- ⑥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입학사정관의 임용) ① 교수사정관은 우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채용사정관은 우리대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하되, 교육경력이나 입학전형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.
- ③ 전환사정관은 본교 직원 중에서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내부 및 외부 위촉사정관은 교내 교수 및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.

제5조(복무 및 교육훈련) ① 입학사정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과 습득한 정보에

대한 비밀엄수, 청렴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외 사항은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.

② 입학사정관은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내외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.

제6조(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) ① 학생부종합전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를(이하 운영위원회)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임사정관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목적, 유형 및 확대 방안
2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따른 주요 사항
3.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사항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
5. 기타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사항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입학사정관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시행한다.